

의안번호	2219073
의 퇴 인	김예지의원
회 답 일	2026.8.21.
추계번호	26D27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모든 선거의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작성·제출하고,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파일 저장매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156억 3,400만원, 2030년 221억 8,3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378억 1,700만원(연평균 75억 6,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국선)	2029	2030 (대선·지선)	2031	합계	연평균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제출 의무화 (안 제65조제4항)	—	9,763	—	12,035	—	21,798	4,360
디지털파일 저장매체 제출 의무화 (안 제65조제11항)	—	5,871	—	10,148	—	16,019	3,204
합계	—	15,634	—	22,183	—	37,817	7,563

주: 1.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제출 의무화(안 제65조제4항), 디지털파일 저장매체 제출 의무화(안 제65조제11항)는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

2. 본 추계는 직전 공직선거의 후보자(정당) 수와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비율 등을 활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5조제4항 (선거공보)	모든 선거의 후보자는 시각장애선거인(선거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을 위한 선거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다) 1종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그림·사진 등을 문자로 설명하는 내용을 포함한다)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바코드를 표시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65조제11항 (선거공보)	후보자는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그림·사진 등을 문자로 설명하는 내용을 포함한다)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하여야 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함께 발송하여야 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65조제4항(선거공보)	○	—
2	안 제65조제11항(선거공보)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모든 선거에서 후보자의 점자형 선거공보 및 저장매체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 예상
 -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점자형 선거공보(같은 법 제65조제11항에 따라 후보자가 제출하는 저장매체를 포함한다)의 작성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부담하고 있음
 - 현행법은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에 대해서만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제출을 의무화하고 있고 의무 대상 후보자도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표시로 이를 대신할 수 있으며, 저장매체는 후보자가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함께 발송하도록 하는 임의규정임
 - 따라서 개정안에서 모든 선거에서 후보자의 점자형 선거공보 및 저장매체 제출을 의무화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
-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서 규정한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화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①신규 작성비용, ②순증 작성비용으로 구분하여 추계
 - 현행법은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한하여 점자형 선거공보의 의무 작성 및 제출을 적용하고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2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모든 선거의 후보자로 확대하고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 규정을 삭제
 - － 「공직선거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는 대통령선거 16면, 국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12면, 지방의회의원선거 8면 이내
 - － 현행법에 따라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는 대통령선거 32면, 국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24면, 지방의회의원선거 16면 이내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①신규 작성비용(현행법에서는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제출의무가 없는 후보자와 정당이 개정안에 따라 신규 작성), ②순증 작성비용(현행법에서 이미 의무적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는 후보자와 정당이 개정안에 따라 증가된 면수로 작성)으로 구분

- 본 추계에서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가 책자형 선거공보의 3배¹⁾로 보아
①신규 작성비용 산출시 대통령선거 48면, 국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36면, 지방의회의원선거 24면을 적용

[표 2]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단위: 면)

구분		현행법 책자형 (a)	현행법 점자형 (b=a×2배)	개정안 점자형 (c=a×3배)
2028년 제23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12	24	36
	비례대표	12	24	36
2030년 제22대 대통령선거 ·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통령선거	16	32	48
	시·도지사	12	24	36
	교육감	12	24	36
	구·시·군의 장	12	24	36
	시·도의원 지역구	8	16	24
	시·도의원 비례대표	8	16	24
	구·시·군의원 지역구	8	16	24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8	16	2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본 추계에서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부수를 시각장애선거인수에 그 100분의 5를 더한 수²⁾로 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전국을 단위로 하는 1개의 선거구이므로 정당 1개당 전국 시각장애선거인수에 상당하는 부수를 작성하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은 모든 선거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지역구선거와 비례대표선거를 구분하여 표시하며, 비례대표선거의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
 - 후보자(정당) 수는 직전 공직선거의 실적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2028년 국회의원선거는 제22대(2024년), 2030년 대통령선거는 제21대(2025년), 2030년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제8회(2022년) 실적을 적용
 - － 비례대표선거는 정당이 선거구마다 명부를 제출하므로 후보자 수가 아

1) 일반적으로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과 동일하게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하는 경우 면수가 책자형 선거공보 대비 약 2.5배~3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위헌확인에 대한 헌재결정례(2014.05.29.) 참고)되며 이에 본 추계에서는 최대치인 3배로 가정

2)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0조제3항제2호

나라 명부 제출 건수(정당 수 × 선거구 수)

- 선거구 수는 후보자(정당) 1인당 부수를 산정하는 분모로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전국 단위 1개, 시·도지사·교육감·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는 16개, 구·시·군의 장·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는 227개이며, 지역구선거는 국회의원선거 254개, 시·도의원선거 795개, 구·시·군의원선거 1,038개
- 후보자(정당) 1인당 부수는 전국 시각장애선거인수를 선거구 수로 나눈 후 100분의 5를 가산하여 산출하며, 전국 시각장애선거인수는 2028년 64,411명, 2030년 65,795명으로 추정
 - 시각장애선거인수는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기준 62,386명이고, 최근 3년 연평균 증가율 1.07%³⁾를 적용하여 추정

[표 3] 공직선거별 후보자(정당) 수 추정: 2028년·2030년

(단위: 명, 개, 부)

구분		후보자 (정당) 수	선거구 수	후보자(정당) 1인당 부수
2028년 제23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699	254	266
	비례대표	38	1	67,631
2030년 제22대 대통령선거 ·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통령선거	7	1	69,086
	시·도지사	54	16	4,318
	교육감	58	16	4,318
	구·시·군의 장	585	227	304
	시·도의원 지역구	1,657	795	87
	시·도의원 비례대표	147	16	4,318
	구·시·군의원 지역구	4,402	1,038	67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476	227	304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본 추계에서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바코드를 표시하는 비용과 저장매체의 발송비용은 추계에서 제외

-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는 일반적으로 무료로 제작·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책자형 선거공보 전체 인쇄비 중에서 별도로 구분하여 책정하지 않음
- 저장매체는 현행에 따른 점자형 선거공보 우편물에 포함되어 발송되고 저장매체 무게(약 2.5g)를 고려할 때 추가재정소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

3)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까지 3년간 연평균 증가율 1.07%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⁴⁾
- 개정안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 추계기간 중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는 2028년 제23대 국회의원선거와 2030년 제22대 대통령선거·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임(재·보궐선거는 추계에서 제외)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제출 의무화 및 면수 제한 폐지(안 제65조제4항)

- 개정안은 모든 선거의 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제출을 의무화하고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 재정소요 예상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①신규 작성비용, ②순증 작성비용으로 구분하여 추계
 - 신규 작성비용: 현행법에서는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제출의무가 없는 후보자와 정당이 개정안에 따라 신규 작성
 - 순증 작성비용: 현행법에서 이미 의무적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는 후보자와 정당이 개정안에 따라 증가된 면수로 작성
- (신규 작성비용) 2028년 61억 1,600만원, 2030년 77억 5,300만원으로 추정
 - 신규 작성건수는 현행법에 따라 작성·제출의무가 없는 후보자(정당) 수로서 후보자(정당) 수, 현행 작성비율을 활용하여 산출
 - 신규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단가는 [표 3]의 후보자(정당) 1인당 부수와 개

4)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6.3 기준)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소비자물가상승률(CPI)	3.5%	2.7%	2.4%	2.1%	2.0%	2.0%

정안에 따른 면수를 「선거비용 보전안내서」의 제작비 산정기준⁵⁾에 적용하고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 맞게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추정

- 개정안에 따른 면수는 대통령선거 48면, 국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36면, 지방의회의원선거 24면

[표 4] 점자형 선거공보 신규 작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년·2030년

구분	후보자 (정당) 수 (a)	현행 작성비율 (b, %)	신규 작성 건수 ($c=a \times (1-b)$)	신규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단가 (d, 원)	추가재정소요 ($=c \times d$) (백만원)
지역구	699	92.4	53	3,721,120	197
비례대표	38	60.5	15	394,617,190	5,919
2028년 소계	-	-	-	-	6,116
대통령선거	7	85.7	1	551,813,537	552
시·도지사	54	98.2	1	28,422,452	28
교육감	58	91.8	5	28,422,452	142
구·시·군의 장	585	87.1	75	4,045,196	303
시·도의원 지역구	1,657	30.9	1,145	1,861,591	2,132
시·도의원 비례대표	147	76.3	35	19,493,594	682
구·시·군의원 지역구	4,402	17.1	3,649	861,573	3,144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476	41.8	277	2,779,062	770
2030년 소계	-	-	-	-	7,75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순증 작성비용) 2028년 36억 4,700만원, 2030년 42억 8,200만원으로 추정

- 순증 작성건수는 현행법에 따라 작성·제출한 후보자(정당) 수로서 후보자(정당) 수에 현행 작성비율을 곱하여 산출
- 순증에 따른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단가는 [표 4]의 신규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단가와 현행법에 따른 면수를 적용했을 때의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단가의 차이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안내서」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의2 제2항제3호에 따라 통상적 거래가격은 직전 임기만료선거의 산정가격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므로, 같은 안내서의 단가가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이 된다. 매수는 양면 1매를 단위로 하여 부수에 면수를 곱한 후 2로 나눈 수이며, 점자인쇄료(1,000매·5,000매·10,000매 초과)와 점자제본료(500부·1,000부·5,000부·10,000부)는 구간이 커질수록 단가가 낮아진다.

[표 5] 점자형 선거공보 순증 작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년·2030년

구분	후보자 (정당) 수 (a)	현행 작성비율 (b, %)	순증 작성건수 (c=a×b)	신규 단가 (d, 원)	현행법 단가 (e, 원)	추가재정소요 (=c×(d-e) , 백만원)
지역구	699	92.4	646	3,721,120	2,516,723	778
비례대표	38	60.5	23	394,617,190	269,879,912	2,869
2028년 소계	—	—	—	—	—	3,647
대통령선거	7	85.7	6	551,813,537	375,104,512	1,060
시·도지사	54	98.2	53	28,422,452	19,493,594	473
교육감	58	91.8	53	28,422,452	19,493,594	473
구·시·군의 장	585	87.1	510	4,045,196	2,779,062	646
시·도의원 지역구	1,657	30.9	512	1,861,591	745,839	571
시·도의원 비례대표	147	76.3	112	19,493,594	13,541,023	667
구·시·군의원 지역구	4,402	17.1	753	861,573	574,382	216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476	41.8	199	2,779,062	1,895,486	176
2030년 소계	—	—	—	—	—	4,28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모든 선거에서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제출을 의무화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97억 6,300만원, 2030년 120억 3,5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217억 9,800만원으로 추정

[표 6]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제출 의무화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국선)	2029	2030 (대선·지선)	2031	합계
신규 작성비용	—	6,116	—	7,753	—	13,869
순증 작성비용	—	3,647	—	4,282	—	7,929
합계	—	9,763	—	12,035	—	21,79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디지털파일 저장매체 제출 의무화(안 제65조제11항)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저장매체를 제출하여야 하는 후보자(정당)의 디지털파일 전환비용과 저장매체 구매비용의 합계
- 디지털파일 전환비용은 전환이 필요한 책자형 선거공보의 총 면수와 전환단가를 곱하여 산출하고, 저장매체 구매비용은 시각장애선거인 세대수 만큼의 수량에 구매단가를 곱하여 산출
- (디지털파일 전환비용) 2028년 1억 6,600만원, 2030년 27억 8,000만원으로 추정
 - 총 면수는 현행 제출물을 반영하여 개정안에 따라 추가로 전환제출이 필요한 대상자 수를 산출한 후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를 곱한 값
 - 전환단가는 면당 디지털파일 전환비용(2026년 기준 45,000원)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값 적용

[표 7] 디지털파일 전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년·2030년

구분	후보자 (정당) 수 (a)	현행 제출물 (b, %)	제출 대상자 수 (c=a×(1-b))	책자형 면수 (d)	총 면수 (e=c×d)	전환 단가 (f, 원)	추가 재정소요 (=e×f, 백만원)
지역구	699	59.9	280	12	3,360	46,818	157
비례대표	38	57.3	16	12	192	46,818	9
2028년 소계	—	—	—	—	—	—	166
대통령선거	7	85.7	1	16	16	48,709	1
시·도지사	54	60.0	22	12	264	48,709	13
교육감	58	50.8	29	12	348	48,709	17
구·시·군의 장	585	16.6	488	12	5,856	48,709	285
시·도의원 지역구	1,657	3.6	1,597	8	12,776	48,709	622
시·도의원 비례대표	147	46.4	79	8	632	48,709	31
구·시·군의원 지역구	4,402	3.2	4,261	8	34,088	48,709	1,660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476	18.7	387	8	3,096	48,709	151
2030년 소계	—	—	—	—	—	—	2,78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저장매체 구매비용) 2028년 57억 500만원, 2030년 73억 6,800만원
으로 추정

- 구매수량은 현행 제출률을 반영하여 개정안에 따라 추가로 전환제출이 필요한 대상자 수를 산출한 후 후보자(정당) 1인당 제출수량을 곱하여 산출
 - 이때, 후보자(정당) 1인당 제출수량은 시각장애선거인이 있는 세대수(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기준 61,323세대)를 선거구 수로 나누어 산출
- 구매단가는 2026년 기준 2,000개 초과 5,000원, 2,000개 이하 6,000원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값을 적용
 - 구매단가에는 USB 구입비·데이터 삽입비·각인비가 포함⁶⁾

[표 8] 저장매체 구매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년·2030년

구분	후보자 (정당) 수 (a)	현행 제출률 (b, %)	대상자 수 ($c=a \times (1-b)$)	1인당 제출수량 (d)	구매수량 ($e=c \times d$)	구매단가 (f, 원)	추가재정소요 ($=e \times f$, 백만원)
지역구	699	59.9	280	249	69,720	6,242	435
비례대표	38	57.3	16	63,313	1,013,008	5,202	5,270
2028년 소계	—	—	—	—	—	—	5,705
대통령선거	7	85.7	1	64,675	64,675	5,412	350
시·도지사	54	60.0	22	4,042	88,924	5,412	481
교육감	58	50.8	29	4,042	117,218	5,412	634
구·시·군의 장	585	16.6	488	285	139,080	6,495	903
시·도의원 지역구	1,657	3.6	1,597	81	129,357	6,495	840
시·도의원 비례대표	147	46.4	79	4,042	319,318	5,412	1,728
구·시·군의원 지역구	4,402	3.2	4,261	62	264,182	6,495	1,716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476	18.7	387	285	110,295	6,495	716
2030년 소계	—	—	—	—	—	—	7,36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안내서」, 2026. 3., 188면. 저장매체 제작비 = USB 구입비 + 데이터 삽입비 + 각인비.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디지털파일 저장매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58억 7,100만원, 2030년 101억 4,8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60억 1,900만원으로 추정

[표 9] 디지털파일 저장매체 제출 의무화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국선)	2029	2030 (대전·지선)	2031	합계
전환비용	—	166	—	2,780	—	2,946
구매비용	—	5,705	—	7,368	—	13,073
합계	—	5,871	—	10,148	—	16,01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모든 선거의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작성·제출하고,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파일 저장매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156억 3,400만원, 2030년 221억 8,3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378억 1,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0]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국선)	2029	2030 (대전·지선)	2031	합계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 의무화	—	9,763	—	12,035	—	21,798
디지털파일 저장매체 제출 의무화	—	5,871	—	10,148	—	16,019
합계	—	15,634	—	22,183	—	37,81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직전 공직선거의 후보자(정당) 수,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비율 및 저장매체 제출률 등을 활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 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nabo.go.kr